

창오초등학교규칙

제정 2001. 09. 07
개정 2006. 04. 06
개정 2011. 04. 11
개정 2015. 04. 07
개정 2016. 04. 06
개정 2021. 04. 08
개정 2022. 12. 09
개정 2023. 04. ○○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본교는 초·중등교육법 제 8조 규정에 의하여 학교규칙(학칙)을 제정하고 초·중 등교육법 제 38조에 규정된 국민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초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교는 창오초등학교(이하는 본교)라 한다.

제3조(위치) 본교는 전라북도 군산시 성산면 동군산로 393번지에 둔다.

제 2 장 수업연한 및 입학자격

제4조(수업연한) 본교의 수업연한은 교육기본법 제 8조 규정에 의해 6년으로 한다. 다만 조기 진급 및 조기졸업의 승인을 받은 아동은 5년으로 한다.

제5조(입학자격) 본교의 제 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아동은 다음 각 ① ② ③ 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 ① 초·중등교육법 제 13조의 규정에 의한 만6세 적령아동
- ② 초·중등교육법 제 13조 규정에 의하여 본교 조기입학 심의위원회에서 승인 한 만 5세 아동
- ③ 취학을 유예한 아동

제 3 장 학생 수용

제6조(학생수용) 본교는 본교학칙 제 5조 ①, ② 규정된 학구내 아동 전원을 수용한다.

제7조(학급편제) 본교의 학급수는 제 5조 1항의 학구내 아동수에 전라북도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8조(학급당 학생정원) 본교의 학급당 학생정원은 전라북도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 4 장 교육과정.수업일수

제9조(교육과정) 각 학년의 교육과정은 교육부 장관이 정한 범위 내에서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학교실정에 맞게 학교장이 정한다.

제10조(수업일수) 본교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 19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주5일 수업의 실시, 연구학교의 운영 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자율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전라북도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의 승인을 얻어 1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제11조(학습부진아동에 대한 교육) 초·중등교육법 제28조 규정에 의해 학습부진아 판별 평가를 실시하여 능력적 및 절대적 학습부진아를 판정하고, 개별 지도계획을 수립 책임 지도한다.

제 5 장 수업 및 휴업일

제12조(수업)

- ① 학년도를 3월 1일부터 시작하여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 ② 학년도를 두학기로 나누되 그 기간은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 44조에서 정한바에 따른다.

제13조(휴업일)

- ① 휴업일은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할 사항으로 교육과정의 탄력적 운영을 위하여 휴가일을 포괄적으로 표시한다(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 47조).
 - 1) 국 경 일
 - 2) 공 휴 일
 - 3) 개교기념일
 - 4) 여름 휴가
 - 5) 동기 휴가
 - 6) 학년말 휴가
 - 7) 효도방학
 - 8) 학교장재량휴업일
 - 9) 토요휴업일
- ② ①항 4호~8호의 휴가 기간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교학칙 제10조 수업일수를 이수하는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조절할 수 있다.
- ③ 제①항 각 호 외에 비상재해, 기타 긴박한 사정이 있을 때에 초·중등교육법 제64조 규정에 의해 휴업 및 휴교명령을 할 수 있다.
- ④ 휴업일에도 필요가 있을 시에는 실습을 부과할 수 있다.

제14조(교외 체험학습)

- ①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본교 체험학습 규정에 의거 이를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

다.

- ② 개인교환학습 인정기간은 (1개월 이내), 단체교환학습은 (2주 이내)로 한다.
- ③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는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5일 이내)로 한다.
- ④ 기타 교환학습 및 교외체험학습 운영 방침은 본교 체험학습 운영 세부규정에 의한다.

제 6 장 과정의 수료 및 졸업 인정

제15조(수료.졸업) 각 학년과 전 학년의 과정을 이수한 아동은 각 학년의 수료와 전학년의 졸업을 인정한다.

제16조(졸업장) 학교장은 학교의 전 과정을 수료하였다고 인정한 아동에게는 졸업장을 수여한다.

제17조(취학의 유예) 초·중등교육법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취학의무 유예처분을 받은 아동은 유급 된다.

제 7 장 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

제18조(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 ① 재능이 우수한 아동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7조 의해 조기진급 또는 조기 졸업을 인정할 수 있다.
- ②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위하여 소정의 교과목을 모두 이수하고 이수증을 받은 아동은 조기진급 또는 조기 졸업이 된다
- ③ 조기진급은 1회에 한하여 시행한다.
- ④ 조기진급과 조기입학은 이로 인해 학급수의 변동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 ⑤ 조기 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19조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대상자 선정)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대상자는 교과목별 이수 인정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조기이수 인정 평가에 의하여 학교장이 선정한다.

제20조(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

- ① 재능이 우수한 아동에게 교과목별 조기이수의 인정을 위하여 교과목별 이수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전 교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1)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에 관한 계획 수립
 - 2)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에 관한 사항
 - 3)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 결과 조기수료 및 조기졸업 인정에 관한 사항
 - 4) 기타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하여 학교의 장이 심의를 의뢰한 사항

제 8 장 입학·전학·편입학

제21조(입학 시기) 입학 시기는 학년 초 3월 1일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제22조(입학결정) 본교의 입학은 초·중등교육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학통지를 받은 아동과 본교학칙 제5조 2항에 해당하는 아동에 한하여 학교장이 허가 한다.

제23조 본교학칙 '만5세 조기입학에 관한 시행규칙'에 의한 조기 입학 허용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입학한 해 3월 31일까지 성산면장에게 그 명단을 통보한다.

제24조(전학) 전학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1조 1항, 2항 3항에 규정절차에 의하여 시행한다.

제25조(재외국민 자녀의 입학)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 1항, 2항에 규정된 절차에 의하여 시행한다.

제26조(장애학생차별금지) (신설)

- ① 입학·전학 등에서 장애를 이유로 입학의 지원을 거부, 전학의 강요, 전입거부를 할 수 없으며 교육기회에 있어서 차별을 하여서는 안된다.
- ② 입학·전학 등에서 비장애학생에게 요구하지 않는 서약서, 보증인 및 추가서류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

제 9 장 학업중단 예방에 관한 사항

제27조(학업중단예방위원회)

- ① 학업중단 위기 학생 지원 및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계획 수립,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하여 학업중단예방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 ② 학업중단예방위원회 구성과 운영은 「전라북도교육청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계획」에 따른다.

제28조(학업중단숙려제)

- ① 학교의 장은 학업 중단의 징후가 발견되거나 학업 중단의 의사를 밝힌 학생에게 학업 중단에 대하여 충분히 생각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그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 ②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학생을 학업중단숙려제 참여 대상으로 선정한다.
 1. 학교에 학업중단 의사를 밝히거나 유예신청서 또는 자퇴원을 제출한 학생
 2. 검정고시 응시, 홈스쿨링, 평생교육시설·미인가 교육시설에서 학습하기 위해 학업중단 의사를 표현한 학생
 3. 담임교사, 전문상담(교)사, 진로·진학 담당교사 등의 협업을 통해 학업중단 징후가 있다고 진단한 학생
 4. 학업중단 예방위원회에서 학업중단 위기 학생으로 판단한 학생
 5. 미인정결석 연속 7일 이상, 또는 연간 누적 30일 이상인 학생
 6. 그 밖에 학생 관찰, 상담 등으로 위기 징후가 발견되어 학교장이 숙려제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학생
- ③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학업중단숙려제 참여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연락 두절, 행방불명 등으로 인해 학업중단숙려제 참여가 불가능한 학생
 2. 질병 치료, 발육부진, 사고, 해외 출국(유학, 이민), 미인정 유학 등으로 부득이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
 3. 학교폭력 등으로 출석이 정지되어 미인정결석으로 처리된 학생

4. 그 밖에 학교의 장이 학교에서 학업중단숙려제 참여가 부적절하거나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학생
- ④ 학업중단 숙려 기간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숙려 기간은 최소 1주 이상, 최대 7주 이하로 운영한다.
 2. 숙려제는 주 단위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숙려 기간 내 주말, 공휴일, 휴업일, 방학 기간 등을 숙려 기간에 산입한다. (단, 평가 기간 제외)
 3. 숙려제 실시 횟수 및 세부 운영 방법은 「전라북도교육청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계획」에 따른다.

제 10 장 학생포상 및 학생징계

제29조(학생포상 및 징계)

학생포상 및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및 학교 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이하 「학교생활규정」이라 한다)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11 장 각종 운영 위원회

제30조 (설치) 학교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위원회를 둔다.(학교 운영위원회를 제외한 모든 위원회의 안건은 교무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다.)

- ① 학교운영위원회
- ② 학교생활교육위원회
- ③ 학교인사위원회
- ④ 학교교육과정위원회
- ⑤ 학교물품선정위원회

제31조 (구성 및 운영) ①위 제30조 각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 규정은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32조 (기능) 각종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세부 규정은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 12 장 수업료. 입학금. 기타 비용징수

제33조 (비용의 징수)

- ① 본교는 수업료, 입학금, 학습 준비물 비용 등 일체의 비용을 학생들에게 부과하지 않는다.
- ②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현장체험 학습비, 청소년 단체 활동비, 제12조에 의한 방과후교육 교육비, 제15조에 의한 각종 검사비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수할 수 있다.

제 13장 학칙개정

제34조 (학칙개정 절차)

- ① 학칙은 교직원 회의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사립학교는 자문)를 거쳐 학교장의 인가를 받아 개정한다.
- ② 다만, 학교생활규정 및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학칙개정절차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미리 학생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③ 제2항의 학생 의견수렴 절차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부 칙

- ① 이 학칙은 인가일로부터 시행한다.
- ② 이 학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한다.